

풍자와 모욕 사이, 샤를리 엽도 만평



전학선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작하며

지난 1월 7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풍자전문 주간지 샤를리 엽도(Charlie Hebdo)의 파리 본사가 테러를 당했다. 오전 11시경 복면을 쓴 괴한 두 명이 급습하여 총기를 난사하였고, 잡지사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에는 에디터인 스테판 샤르보니에(필명 샤르브)를 비롯해 공동 설립자 장 카뮈, 티그노스, 월린스키 등 만평 작가 4명이 포함돼 있다.¹⁾ 이 사건은 샤를리 엽도가 그간 발간해 온 ‘불경스런 그림들’²⁾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프랑스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샤를리 엽도는 정치·문화·종교·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풍자적 성격의 만평을 실었다. 이슬람뿐 아니라 극우주의, 기독교, 유대교도 풍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자층을 확보해왔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롯하여 예수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히틀러 등에 대해 조롱에 가까운 풍자를 하였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도 풍자한 바 있다. 만화, 르포, 논쟁, 농담 등을 주로 실었으며, 논조는 비교적 공격적, 성향은 매우 반종교적인 좌익 언론이라는 평이 많았다.

샤를리 엽도 테러 이후 프랑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의미에

1) 머니투데이 국제경제팀(2015. 1. 8.), “佛 풍자주간지 ‘샤를리 엽도’ 테러로 12명 사망”, 〈머니투데이〉 <http://t.me.co.kr/view.html?no=2015010801410531875&cate=flash>

2)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고, 이슬람교 신자들은 무함마드의 모습을 보는 것을 모욕적으로 여긴다. 박성진(2015. 1. 8.), “테러범들이 저격한 샤를리 엽도의 만평들”, 〈허핑턴 포스트〉 http://www.huffingtonpost.kr/2015/01/08/story_n_6434514.html

서 “내가 샤를리다(Je suis Charlie).”라는 구호가 등장하였고, 이와 반대로 타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Je ne suis pas Charlie).”라는 구호도 등장하였다.

샤를리 엽도 동일 사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잘 보여주는 문구들. “나는 샤를리다”(좌측) v.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우측)



이 글에서는 우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헌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샤를리 엽도 사건과 관련하여 만평의 종교풍자 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지 혹은 제한해야 하는지, 제한한다면 어떤 경우 제한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³⁾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3)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⁴⁾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표현의 자유가 도출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국가를 건설한 프랑스는 1789년 인권선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인권선언 제11조는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존귀한 권리 가운데에 하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인권선언 제10조는 “누구든지 그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공공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한, 그의 견해 특히 종교상의 견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다른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폭 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인권선언 제11조는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으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즉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면서도 그 제한에 관하여 규정을 둔 것이다.

20세기 들어와서는 많은 법률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935년 3월 29일의 언론인의 직업적 지위에 관한 법률(*loi du 29 mars 1935 relative au statut professionnel des journalistes*)이라든가, 1949년 7월 16일의 청소년 운명공포에 관한 법

4)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를(*loi n°49-956 du 16 juillet 1949 sur les publications destinées à la jeunesse*), 1986년 8월 1일과 11월 27일의 언론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loi portant réforme du régime juridique de la presse*)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881년 7월 29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성격의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81년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명예훼손을 “사람이나 집단의 명예나 평가에 침해를 가져다주는 사실의 주장 또는 비난”이라 하였고, 제29조 제2항은 모욕 행위를 “아무런 해당 사실의 적시 없는 모든 모욕적인 표현, 경멸의 말 또는 욕설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만평, ‘예술적 언론’

만평의 표현의 자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만평의 성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만평은 그 자체로 저널리즘의 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성격을 띤다.

신문 등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사회비판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백미는 무엇보다도 풍자를 통한 카툰⁵⁾ 즉, 만평의 형태로 나타난다.⁶⁾ 만평은 본질적으로 여타의 희화적 표현과는 달리, 일반적 사회 현상과 모순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풍자나 만화는 예술이라고 평가되며, 역시 풍자가 많이 활용되는 일종의 만화, 즉 만평도 예술적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⁷⁾ 풍자의 경우,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해 실제 생각된 바를 더 상회하는 외관상의 과장법이나 실제 생각된 바를 변형하여 표현하는 일종의 왜곡법이 많이 쓰인다. 그렇지만 정통한 독자나 관찰자는 표현내용을 자신이

5) 카툰은 ‘큰 종이 한 장(A Big Sheet of Paper)’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벽화의 밑그림처럼 대강 그린 그림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19세기 초반까지 캐리커처(Caricature)와 유사어로 쓰이다가 오늘날과 같은 카툰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카툰이란 용어가 한국 만화계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이며, 이는 ‘한 칸 만화’와는 개념을 달리하는 시각 언어로서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카툰이란 신문에 실리는 1~4컷짜리 시사 만화 및 만평이 속한다. 본고에서는 만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재진(2006), 〈언론자유와 인격권〉 191-192면; 이원복(1991), 〈세계의 만화, 만화의 세계〉 232면; 임청산(1989), 〈응용 예술로서의 만화 미학〉 184면.

6) 이원복, 앞의 책, 157면.

7) 이하 예술의 자유 관련 내용은 박용상(2002), 〈표현의 자유〉 476-488면을 인용하였다.

이미 알고 있거나 사실상 의미된 내용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방식을 법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묘사가 전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풍자적 또는 만화적 형태의 치장으로부터 구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치장으로부터 언급하려는 바를 분리하고, 양자를 별도로 음미·조사하여야 한다.

이처럼 ‘예술적 언론’에 해당하는 만평은 그 경우에 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받게 된다. 풍자에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표현양식이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예술로서 그에 상응하는 자유공간이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술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자유는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인 자유권을 보장한다. 정신적 표현의 자유로서 뿌리를 갖는 예술의 자유는 사고와 감정의 창조적 제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표현의 자유와 구별되는 독립된 보호영역을 갖는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심미적 또는 초월적 묘사라고 하는 고도의 진실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예술적인 창조과정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으려면 예술가가 현실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구상하는 형태와 방법이 사전에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에 대한 태도의 타당성 여부는 예술가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고, 예술의 자유는 예술적 활동의 방법, 내용 및 경향에 대해 간섭하는 것, 특히 창작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의 자유도 제한이 따른다. 우리 헌법 상 예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법률유보에 따르게 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예술표현자유에 제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예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 기본권은 아니다. 예술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명예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략) ...”

예술형식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목적으로 남용된다거나, 작품의 내용 및 묘사의 객관적인 평가나 인식되는 작가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작품이 예술 외적인 관심을 추구하는 것이면 예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보호 등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예술의 자유와 종교감정의 침해

때로는 종교적 내용을 다룬 예술작품이 공공의 종교감정이나, 타인의 신앙을 모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⁸⁾ 이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다음의 프랑스 판례는 예술자유에 한계를 보여준다.

〈사례 1〉 신성모독적 영화광고 사건(1984)

이 사건은 영화를 광고하는 벽보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신앙의 자유와 관련되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의 한 영화제작사(Film Galaxie)는 1984년 ‘아베 마리아(Ave Maria)’라는 영화를 제작한 후, 이를 광고하기 위해 파리 주요 시내 및 광장에 대형 벽보를 붙였다. 그 벽보에는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인 처녀가 나체에 머리칼이 흐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다. Saint Pie X(예수 그리스도 성총회)와 같은 종교단체들은 위 벽보가 프랑스 카톨릭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영화제작사가 모든 공공장소에서 이를 제거토록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원은 영화제작사로 하여금 제거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위 벽보가 행인들의 시선을 끄는 상업적 광고에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모욕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했고 이는 사람들의 깊고 내밀한 종교적인 믿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영화광고와 같은 벽보를 제작하고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판시에 의하면, 인간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아무런 침해나 모욕의 위험 없이 거리를 자유로이 왕래할 자유가 있는데, 위 벽보는 이러한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의 제2심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파리고등법원 1984. 10. 26, Ste Films Galaxie et autres c. Association et autres 판결).

또한 다음 판결은 법원이 문제된 영화작품의 철학적, 도덕적, 미적 가치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예술과 신앙과의 관계에 관하여 비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영화의 내용이 철학적, 도덕적, 미적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화에 의해 종교단체나 신봉자들로부터 신앙과 종교적 감정의 침

8) 이하 〈사례 1〉과 〈사례 2〉의 내용은 박용상(2002), 앞의 책, 467-470면을 인용하였다.

해가 있다고 주장된 경우에는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설시한다.

〈사례 2〉 기독교신앙 모독 영화 사건(1987)

이 사건은 프랑스 파기원이 종교적 내용을 다룬 영화가 타인의 신앙을 침해하는 경우, 창작자유의 한계 문제를 다룬 것이다. 1985. 1. 27.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Je vous salue, Marie)’라는 제목의 영화가 최초로 상영되었는데, 그 제작자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마리아가 원죄 없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믿음)의 신비와 교리를 현재화하여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비를 표현한 것이며, 완전한 나체 이미지를 통해 모든 기교와 수식을 없앤 이미지를 통해 이 신비의 현재화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날 ‘인종주의 반대와 프랑스 및 그리스도의 정체성 존중을 위한 총연합회’와 ‘카톨릭 가족모임 전국연합회’는 위 영화의 감독과 제작사 및 보급사를 상대로 위 영화가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을 모욕적인 방법으로 조롱하였다는 이유로 파리지방법원에 위 영화의 상영금지 및 문제적 장면의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제1심(파리지방법원 1985. 1. 28. 판결)은 문제가 된 작품의 철학적, 도덕적, 미적 가치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예술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민사재판을 하는 법관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영화가 그리스도교적인 영화이든, 지적이나 신학적인 고찰의 형식을 빌린 시(詩)이든 간에 우리 시대의 모순과 양식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우리 시대에 다시 투영해 보고 느껴보려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결국 이 작품은 직접 영화를 본 관객들의 비판과 제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정신적 작품으로 그 영감과 표현 등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어느 장면의 삭제 등을 법관이 명하는 것은 작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제2심인 파리고등법원은 정신적 창작물의 제작자에게는 범죄행위를 찬양, 고무하거나 기타 법에 위반된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 한, 그 목적이나 표현방법 등에 있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면서, 위 영화가 폭력, 인종차별, 인간에 대한 증오 등을 부추기거나 옹호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해서는 제1심과 판단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파기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Digon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위 영화에 청구인 종교단체에게 신앙이나 종교적 감정에 대한 침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그 침해행위가 예외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처분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장이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809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명백하게 불법한 침해를 그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전조치나 강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위 영화가 청구인 종교단체의 믿음이나 종교적 감정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정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예외적으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손해의 긴급성이나 그를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고 바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영화에 의해 종교단체나 신봉자들로부터 신앙과 종교적 감정의 침해가 있다고 주장된 경우에 법원은 영화의 내용이 철학적, 도덕적, 미적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영화에 의해 청구인들이 신앙과 종교적 감정의 침해를 받았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침해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침해의 정도가 예외적일 정도로 중대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할만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가처분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판례들과 다른 취지의 판결도 있었다.

〈사례 3〉 무함마드 모욕 만평 사건(2007)

2007년 3월 파리경죄법원(Le tribunal correctionnel de Paris)은 샤를리 엡도가 무함마드 만평을 발간한 것을 몇몇 이슬람 단체가 고발한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프랑스에서는 모든 종교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은 만평이 선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만평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 만평 자체가 이슬람 전체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모욕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이 경우, 만평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만평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⁹⁾ 우

9) 대법원 2000. 0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리나라 역시 풍자나 만평에 관하여 법적으로 판단할 때 그 풍자적 외피를 제거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며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과장 및 왜곡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예술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평가에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언어와 그림에 의해 선택된 풍자적인 외피를 벗겨야 한다. 만평은 이러한 예술적 특성을 지니는 저널리즘의 한 요소임을 이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종교감정 침해가 표현자유를의 한계를 결정짓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만평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가 제각기 다를 수 있고, 같은 사회라도 시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번 샤를리 엽도 사건은 단순히 종교에 대한 모욕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사회에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응축돼 나타난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 표현자유를의 허용범위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풍자 및 만평과 타인의 권리침해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풍자 및 만평은 그 기준을 설정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몇몇 프랑스 판례들을 통하여 풍자 및 만평의 표현자유 허용기준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것이고, 한 국가에서도 사안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저마다 법문화, 사회적인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법 규정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